

중국의 사회단체 정책: 통일전선전술을 중심으로

김성민*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으로의 적용 |
| II.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 | IV. 맺음말 |
| III. 통일전선전술의 사회단체 정책 | |

| 논문요약 |

통일전선전술은 맑스-레닌주의 전통에서 공산당의 기본적 조직전술이자 행동전술이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혁명과 정에서, 그리고 국가 수립 이후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통일전선전술을 국가정책에 활용해 왔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사회단체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해 있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통일전선전술은 마오의 모순론에 기인하고 있다. 모순론과 통일전선전술의 핵심원리는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의 원리,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의 원리, 대립과 통일의 원리로 압축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핵심원리는 사회단체를 다루는 정책방침에도 반영되어 있다. 통일전선전술은 결국 대립과 통일의 결합 혹은 동일성과 투쟁성의 결합으로 귀결되는데, 이로 인해 사회단체 정책 역시 이중성을 띠게 된다. 사회단체에 대해 포섭과 포용을 시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쟁과 통제적 관리를 동시적이고 중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의 사회단체 정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할 경우, '포용과 통제의 변증법적 결합에 따른 이중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주제어: 통일전선, 통일전선전술, 대립과 통일, 사회단체, 중국의 사회단체 정책

*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

I . 머리말

주지하듯이 개혁개방 시기를 지나면서 중국 시민사회의 부상과 사회단체의 양적 증가 현상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제2차 천안문 사태와 연이은 치리정돈 방침으로 잠시 정체기를 맞이했다가 1992년 개혁개방의 재개 및 심화를 계기로 다시금 성장세를 회복하게 된 중국 시민사회와 사회단체에 대한 학문적 및 실천적 관심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시민사회와 사회단체를 연구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된 것 중 하나는 ‘관계 맺기’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당/정부와 사회단체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의 연구질문이 그것이다.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주목과 관찰은 상당한 파생성과 확장성을 지니며 다른 몇 가지 사항들까지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둘 사이에 설정된 관계구조는 그 특정 관계 하에서의 두 주체가 보이는 특징, 존재 양태, 행위 양상과 반경 등을 규정하는 근본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 국가와 사회관계, 국가와 사회단체 관계를 관찰하고 설명하는 대표적인 관점은 (국가)조합주의 이론이다. 조합주의적 관점은 강력한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곳에서 상당한 설명력을 제공하고 적실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와 사회 내 조직과 집단을 향한 국가권력의 위로부터의 침투와 그 이후의 포섭 및 통제 그리고 그로 인해 구축된 구조 및 그 구조 하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현실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그 침투와 포섭 및 통제를 감행하게 된, 즉 그것을 유발시킨 국가권력의 최초 인식들과 시각, 행동논리와 행위지침, 근본동인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려 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매우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당과 정부의 강력한 정치권력이 여전히 모든 방면에서 작동하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볼 때 당과 정부가 허용했기에 가능한 것일 텐데 그 허용방침을 배태하고 유발한 당과 정부의 사고 및 행동의 최초 근원과 논리는 무엇일까, 사회단

체를 대하고 다루는 당과 정부의 기본적 행동방침과 원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에 따라 양자 간에 설정된 관계는 어떠한 것이며 그 관계 하에서 사회단체가 처하게 된 상황은 무엇인가, 사회단체와의 관계 설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권력은 사회단체 정책을 통해 사회단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초기 과정에서 필자는, 사회단체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의 근원이 아마도, 창당 이후 중국 공산당의 주요한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고 규정했던 기본적 지침인 통일전선전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가설을 설정한 후 사회단체를 대하는 당과 정부의 방침과 내용을 고찰한 결과, 개혁개방 이후 시기 중국의 사회단체 정책에는 마오의 모순론에서 기인하는 통전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으며 통일전선전술에 의거해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본 논문의 간략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마오의 모순론 및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의 기본개념과 내용을 다루려 하고, III장에서는 모순론과 통일전선전술이 사회단체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전적 시각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으려 한다.

II.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

1. 모순론의 기본개념과 내용

『모순론』(이하 모순론)에 담겨 있는 마오의 변증법적 관점은 비단 맑스-레닌주의적 전통뿐 아니라 『주역』, 『한서(漢書)』 등 중국의 고전에서 발견되는 ‘음양조화’, ‘상반상성(相反相成: 상호 대립하면서 서로를 이룬다)’, ‘상변(常變: 일정성과 변화성)’, ‘동정(動停: 운동과 정지)’ 등의 변증적 개념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었다(이철승 2001, 287). 옌안 시기인 1937년에 집필된 모순론은 “사물의 모순법칙, 즉 대립과 통일의 법칙은 유물

변증법의 가장 근본적 법칙이다.”는 말로 시작한다. 모순은 ‘투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두 요소/측면이 공존하면서 맺는 상호 관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 모순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¹⁾

모순론의 1장에 따르면 모순은 자연과 인간사회 속 모든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물 내부의 모순성이 바로 사물의 운동과 발전을 추동하는 근본원인이 된다. 예컨대 사회적 변화는 사회 내부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 계급 간의 모순, 새 것과 낡은 것 간의 모순 등의 발전에 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사회의 전진 및 신규(新旧) 사회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맑스-레닌주의가 말하는 유물변증법의 기본적 관점인데, 마오는 1장 말미에서 이 변증법적 세계관이 모든 사물의 운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그 분석에 기초하여 모순의 해결방법을 제시해준다고 말하면서, 모순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2장에서는 모순의 보편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보편성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모순이 모든 사물의 발전 과정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각 사물의 모든 발전 과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순의 운동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물에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인 두 측면의 상호 의존과 상호 대립(투쟁)이 모든 사물의 양상을 결정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기에, 모순이 없는 사물, 자연, 사회는 없으며 따라서 모순이 없으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모순의 보편성이다.

2장에 이어 3장에서는 모순의 특수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모든 사물의 운동 안에서 모순은 각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사물은 그 본질에 있어 서로 구별된다. 사물의 운동의 기초가 되는 모순들은 저마다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모순은 사회주의 혁명의 방식으로, 식민지와 제국주의 간의 모순은 민족혁명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2월혁명과 10월혁명

1) 이하 『모순론』의 각 장에 대한 내용 설명은 원전 및 번역본 세 권을 비교·대조하여 종합하였음.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1991); 마오쩌둥(1989); 브루노 쇼 편(1986).

은 그 본질에 있어 다르기에, 즉 모순의 성격이 다르기에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도 그리고 해결된 모순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요컨대, 모순하는 각 측면의 특수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본질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 모순의 특수성 문제에서 나타나는 주요모순과 모순의 주요측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복잡다기한 사물의 발전과정에는 여러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주요모순이고 그 주요모순의 존재와 발전은 반드시 주요하지 않은 다른 모순의 존재와 발전을 규정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자산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모순이 주요모순이 되고, 잔존한 봉건계급과 자산계급의 모순, 소자산농민과 자산계급의 모순, 무산계급과 소자산농민의 모순 등 다른 모순들은 모두 주요모순의 힘에 의해 규정되고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을 침탈했을 때 중국의 각 계급들은 일부 매국세력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단결하여 민족적 투쟁을 벌였다. 이때 제국주의와 중국 간의 모순이 주요모순이 되고, 그 외 봉건제도와 인민대중 간의 모순 등 다른 모순들은 일시적으로 부차적인 지위로 후퇴하게 되었는데 아편전쟁, 청일전쟁, 의화단전쟁, 중일전쟁 등이 모두 그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각 과정의 단계마다 주요모순을 정확히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며, 주요모순과 주요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주요모순을 포함한 전 세력을 단결시켜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모순론 4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논의를 심화시켜 나간다. 투쟁의 과정 내 각 단계마다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차요모순)이 있듯이, 하나의 모순의 투쟁도 그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순의 주요한 측면’이라는 개념이다. 주요모순이든 부차모순이든 모든 모순에는 두 가지 측면과 대립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쪽이 그 모순의 근본적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한 측면이 되고, 나머지가 부차적 측면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투쟁을 통하여 모순의 두 측면은 상호 전화하며 그에 따라 사물의 성질도 변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4장에 이르기까지 모순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하고 외부적으로 고찰했다

면, 5장에서는 자기운동으로서의 모순 내부로 들어가 모순의 운동과 그 변증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마오는 모순하는 양 측면의 동일성과 투쟁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먼저 동일성이란 상호 침투, 상호 관통, 상호 의존, 상호 결합 등과 같은 의미로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모순하는 양 측면은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대 측면을 자기존재의 전제로 하여 하나의 통일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동일성의 제1의 의미가 되는데, 예컨대 생과 사, 음과 양, 상(上)과 하(下) 등이 그러하고 지주와 소작농,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침투하고 결합하며 의존하고 있는데 이 성질이 바로 동일성이라는 것이다. 둘째, 모순하는 양 측면이 하나의 통일체 안에서 공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순하는 양 측면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 서로 그 반대면으로 전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동일성의 제2의 의미가 된다. 이를 다른 말로 모순의 상호 침투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투쟁성이란 무엇이고, 동일성과 투쟁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마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레닌의 언급을 인용하고 있는데, 레닌은 ‘대립의 통일(즉 동일성)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며 상대적이다. 상호 배척하는 대립의 투쟁(즉 투쟁성)은 절대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모순론의 설명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모든 과정의 불변성은 상대적이지만 한 과정이 다른 과정으로 전화되는 변동성은 절대적이다. 정지상태와 변동상태, 이 두 가지 상태의 운동은 상호 모순하는 두 요소가 상호 투쟁함으로써 야기된다. 사물은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전화하고 모순의 투쟁은 이 두 가지 상태 속에 존재하는 동시에 두 번째 상태를 거쳐 모순의 해결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대립의 통일은 조건적, 일시적, 상대적이지만, 상호 배척하려는 투쟁은 절대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다. 절대적인 투쟁성은 상대적인 통일성 가운데에서도 늘 관찰되는 것이기에 투쟁성 없는 동일성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물의 모순 운동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 동일성과 투쟁성이다. 이것이 동일성과 투쟁성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투쟁성의 의미다. 천두슈가 투쟁을 저버림으로써 동일성(통일전선)도 상실하게 되었다는 해석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다.

모순론의 마지막 6장에서는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마오의 표현대로 모순의 투쟁성 개념에는 ‘적대’란 무엇인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순의 투쟁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 즉 투쟁의 형태는 모순의 성질, 즉 적대적 모순이나 비적대적 모순이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비적대적 모순을 잘못 다루면 적대적 모순으로 전화 또는 발전할 수 있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적대적 모순 중 대표적인 것이 인민 내부의 모순이라 할 수 있는데, 인민 내부의 모순 등 비적대적 모순은 지나치고 격렬한 투쟁이 아닌 협력 및 원조 등에 의거해 해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 통일전선전술의 기본개념과 내용

레닌주의 전통에서 ‘통일전선’이란 강한 적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다른 세력과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공산당의 행동노선을 뜻한다. 이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전술전략을 통일전선전술 혹은 통일전선전략이라 부르는데, 중국 공산당은 창당 초기부터 코민테른의 영향으로 통일전선전술을 중요시했고 이후 국민당을 포함한 여타 집단 및 세력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해 왔다. 예컨대,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은 서로 모순을 이루고 있는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군벌, 제국주의 세력,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 즉 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1924년과 1937년의 1, 2차 국공합작이 된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은 마오의 모순론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모순론이 통일전선전술의 이론적 기반이자 실제적 지침이 된다는 뜻이다. 모순론의 내용 가운데 주요모순과 부차모순, 모순의 상호 전화, 통일(동일성)과 대립(투쟁성),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 등의 개념이 통일전선전술을 형성하고 실행하는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기초로 작용한다. 국공합작과 국공내전을 사례로 삼아 이것이 모순론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927년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상해에서 기습적으로 자행한 백색테러로 국공합작이 분열된 이후 십여 년간 대립하던 국공 양당은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을 계기로 두 번째 합작을 하게 된다. 모순론

의 관점에서 볼 때 제2차 국공합작의 성립, 즉 공산당이 국민당과 두 번째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된 이유는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정세와 국면이 변화되어 십여 년간 주요모순이던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계급모순²⁾이 부차모순의 지위로 후퇴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민족모순이 주요모순으로 부상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당은 모순론에 근거한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적대세력이었던 국민당을 통일전선의 대상, 즉 연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 명명한 ‘항일통일전선’의 형성과 구축이다. 항일통일전선을 수립하여 일본에 대항하여 투쟁을 전개하던 중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중일전쟁도 끝나게 된다. 즉 중국과 일본 간의 민족모순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세와 국면의 변화에 따라 부차모순이던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모순이 다시금 주요모순의 지위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 주요모순을 처리하기 위해 양 세력 간의 통일전선은 해체되고 국공내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국공합작과 국공내전의 사례만 보아도 모순의 특수성 개념,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의 개념, 모순 상호 전화의 원리, 통일과 대립의 원리 등이 모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과 그 이후 마오 시기의 통일전선은 넓은 의미로 볼 때 기본적으로 혁명통일전선이라 표현할 수 있다. 통일전선을 형성·구축하려는 근본목적이 민족혁명, 신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기, 단계, 정세에 따라 모순의 성격이 달라지듯이 혁명의 단계와 과제에 따라 혁명통일전선의 성격, 내용, 대상, 범위 등도 달라지게 되는데, 1949년 이후 마오 시기의 혁명통일전선을 크게 일별해 보면, 1953년 이전까지 통일전선의 성격은 신민주주의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으로 규정되었고 그에 따라 통일전선의 대상과 범위는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이었다. 이는 <공동강령>과 오성홍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953년 6월부터 시작된 과도기 총노선 시기 이후 당과 국가 차원의 목표와 과제가 사회주의적 개조로 바뀌게 되면서 통일전선의 성격과 대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신민주주의 혁

2) 국민당과 공산당은 각각 중국의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대표하기에 양당 간의 모순은 곧 계급모순이라 할 수 있다.

명 단계의 인민민주정치에서 정부와 국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던 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이 제외된 것이다.

이렇듯 모순론에 기초하여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 이론은 반봉건 및 반제국주의 투쟁, 민족해방 투쟁 등 공산당의 중요한 정치적 투쟁 시기마다 적용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추진 과정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본적인 전술로 활용되었다(윤경숙 2003, 106). 1950년대 토지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 빈농이 중농과 단결하여 부농을 중립화시키면서 점차적으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해 나갔던 것과 공업부문에 있어 노동자들에 기초를 두고 민족자산계급을 연합세력에 끌어들이는 것(김계일 1987, 210-219), 개혁개방 이전의 마오 시기까지 주요모순이자 적대적 모순이었던 서방 자본주의 진영과의 관계 전환, 4대방면의 현대화 정책 등은 모두 모순론에 기초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을 충실히 이행한 것들이었다.

통일전선전술에서는 일차적 최우선 과제인 주요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부차모순과의 일시적 연합이나 우호적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연합의 기반이 되는 동일성 속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결국 공산당과 국가권력에 유리한 형태로 이끌어가는, 이른바 ‘동일성과 투쟁성의 변증법적 결합’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통일전선을 통하여 모순들을 공산당과의 연합세력으로 포섭해 나감으로써 소수의 적을 고립시키고 다수의 동조세력 혹은 우군을 확보하면서 공산당의 모순해결능력과 나아가 집권 및 집정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통일전선전술의 사회단체 정책으로의 적용

1.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의 원리

당과 국가의 일차적 과제인 주요모순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비주요모순, 즉 부차모순과 일시적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에 관한 개념원리는 (시민)사회 및 사회단체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도 반영되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은 중국이 당면한 주요모순이 더 이상 계급 문제나 기타 문제가 아닌, 인민의 잘 살고자 하는 욕구와 -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 생산력 낙후 간의 모순, 즉 경제 방면의 문제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생산력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중국의 최대 국정과제로 부상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주요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도구가 바로 개혁개방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요모순이 해결될 때까지, 즉 경제성장이 완성될 때까지 중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기타 부차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격렬한 투쟁을 멈춘 채 주요모순이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연하게 다루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개혁개방 시기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통전 방침이라 파악할 수 있다.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의 구분 및 부차모순에 대한 통일연합전선의 실시라는 행동원칙은 - 시기상·단계상·정세상 부차모순에 해당하는 - 사회단체를 대하는 국가권력의 관점과 정책에도 반영되었는데, 천안문 사태로 인한 치리정돈의 기간이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로 인해 종결되고 개혁개방의 재개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선언된 1992년 이후 중국의 사회단체 수가 급속히 증가한 사실³⁾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시민)사회영역의 성장 및 사회단체의 증가 현상은 당과 정부의 허용과 묵인 없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오 시기 동안 사회단체는 기본적으로 당과 정부의 통일전선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를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맑스주의적 관점 때문이기도 했고, 보다 근본

3) 2차 천안문 사태 발발 전인 1989년 초 전국성 사회단체와 지방성 사회단체는 각기 1,600개, 20만 개였다. 치리정돈 시기 동안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정리정돈 작업이 시행되어 1992년에 이르면 전국성 사회단체와 지방성 사회단체는 각각 1,200개, 18만 개로 감소하였다. 치리정돈의 종결과 개혁개방의 재개 이후 사회단체 숫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 2차 천안문 사태 이전의 - 예전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는데, 1996년에 이르면 전국성 사회단체 1,800개, 지방성 사회단체 20만 개에 이르게 되었다(康曉光 2001, 18; 장영석 2002, 200).

적으로는,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한 당국가 체제 하의 ‘총체성 사회(總體性社會)’⁴⁾로 표현되는 마오 시기의 특성상 민간사회영역의 성장과 - 아래로부터의 - 민간사회단체의 출현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개혁개방 노선 실시에 따른 시장화 개혁의 진전과 심화는 민간사회영역의 태동과 사회단체의 출현을 가져온 배경이 되었다. 사회단체를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대표체로 간주하며 적대시했던 이전 마오 시기와 달리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 정부는 사회단체에 대해 우호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사회단체의 출현과 성장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장려하게 되었다(김재철 1999, 202). 그리고 그 근본적이고 주요한 이유는 위에서 밝힌 바처럼 ‘경제성장의 달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최우선적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당과 정부는 경제성장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반조치들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새롭게 대두한 시장과 사회 내 민간조직 또는 사회단체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중개조직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지원방침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 중개조직은 시장과 사회의 각 주체들 간의 거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1993년 12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립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정(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若干問題的決定)>은 “시장중개조직을 발전시켜 서비스, 공증, 감독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때 중개조직이란 컨설팅 회사, 자문회사, 자산평가기관,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을 포함한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6, 529; 이남주 2007, 75). 시장경제 활성화와 경제효율 제고를 위해 당과 정부가 시장과 사회 내의 민간단체인 중개조직들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 우호적 협조관계 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중국 국가권력이 개혁개방 노선 실시 이후 모순론과 통일전선전술에 의거해 - 경제성장을 위해 - 사회단체의 존재와 활동을 허용하고 장려하였다는 사실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설립된 사회단체의 대다수가 산

4) ‘총체성 사회(總體性社會)’ 혹은 ‘총체적 사회’란 당국가 체제가 사회를 삼켜버린, 즉 국가-사회 일원화 구조를 일컫는 표현이다.

업 혹은 경제 관련 단체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1986년 한 해 동안 전국성 사회단체가 54개 설립되었는데, 이 중 60%가 넘는 33개 단체가 ‘협회(協會)’였으며, 이 33개의 협회 중 70%가 넘는 24개가 경제 관련 단체들이 주도해 만든 산업별/업종별 협회였던 것이었다.⁵⁾ 이를 통해 중국 당과 정부는 개혁개방 시기의 경제성장에 사회단체의 전문지식과 기술 등의 역할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판단 하에 산업, 경제, 과학기술 관련 학회와 협회 등 사회단체들의 전문성을 경제효율의 향상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孫遠東 1998, 50-53).

그 외에도, 개혁개방 시기의 시장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즉 마오 시기의 비효율적 행정체제와 구조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도 사회단체에 대한 허용과 지원은 필요한 것이었다. 중앙지령성 계획경제 시기 비대해지고 비효율화된 행정체제와 구조, 그리고 그에 수반되었던 방만한 국가재정의 투입은 개혁개방 시기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과 정부는 계획의 축소 및 국가재정 절감 등과 관련된 행정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민간사회조직의 증가로 이어졌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허용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국가로부터 백퍼센트 예산지원을 받으며 인민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던 마오 시기의 정부 산하 기관들이 계획의 축소와 국가의 후퇴로 인해 예전처럼 국가의 절대적 지원을 득할 수 없게 되면서 생존을 위해 민간사회조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래 민간비기업단위(民辦非企業單位)⁶⁾가 급증한 것은 기존의 정부 산하 단위들이 민간사회조직으로 탈바꿈한 결과였다(이남주 2007, 76). 이외에도, 1990년대 시행된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으로 당과 국가기구에 대한 감축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정개혁 과정에서 감축된 기관과 인원들 중 일부는 시장과 사회영역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반관반민 조직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개혁개방 시기 경제성장과 시장경제로의 구조전환에 집중해야 했던 당과 정부로서는 국가운영 및 사

5) 33개 협회 중 24개의 경제 관련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체육 관련 협회였다(이동영 2013, 5).

6) 민간비기업단위는 사회단체, 기금회(재단)와 더불어 중국의 공식적인 민간사회조직을 구성한다.

회경제 방법의 운영에 있어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의 제고가 불가피해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기존 국가/정부기구들의 감축 및 민간사회조직으로의 전환을 직간접적으로 도모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 국가영역에서 사회영역으로, 혹은 반관반민 단체로 전환된 - 사회단체들을 통일전선의 대상이자 국정운영의 하위 파트너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2.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의 원리

마오는 모순론에서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을 구분하고 있는데, 비적대적 모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모순, 자산계급과 무산계급 혹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의 계급모순, 식민모국과 식민지 간의 민족모순 등의 적대적 모순과 달리 적대적 성격(적대성)을 띠지 않는 모순을 말한다. “적대와 모순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적대는 소멸하지만 모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레닌의 언급은 바로 비적대적 모순을 일컫는 것이었고 ‘인민 내부의 모순’이 그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마오는 모순론에서 비적대적 모순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사회주의 사회에도 여전히 항상 존재하는 혹은 존재할 수 있는 비적대적 모순은 적대성을 가지지 않기에 적대적 모순을 해결할 때 처럼 과도하고 격렬한 투쟁이 아닌 협력과 원조의 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둘째, 비적대적 모순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다룰 경우 적대적 모순으로 전화할 수 있기에 동일성과 투쟁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당에 유리하도록 연합전선으로 이끌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후 태동하고 성장하게 된 (시민)사회영역 및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세력을 바라보는 중국 당과 정부의 관점은 무엇일까. 모순론과 통일전선전술에 근거하여 시민사회와 사회 내 사회집단들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인식하면서 협력과 원조 등 적절한 방식을 동원하여 당과 정부에 유리하도록 연합전선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통해 이를 고찰해 보자.

이민자(2008/2009, 16) 교수는 중국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그의 논문에서 ‘체제 내 시민사회와 체제 외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민자 교수의 언급에 필자의 견해를 혼합하여 설명하자면, ‘체제 내 시민사회’란 국가권력에 포섭 및 포용되어 법적·제도적 공간을 공식적·합법적으로 보장받은 상태로 활동하면서 당/정부/국가와의 협력과 공생을 통해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민간사회집단들의 총합을 말하고, ‘체제 외 시민사회’란 이와 반대로 국가권력과 체제 내로의 포섭을 거부하고 당과 국가가 설정해놓은 통제범위를 이탈한 채 비공식적, 비제도적 그리고 불법적으로 생존하면서 지속적인 억압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 주로 인권단체와 종교집단 등으로 대표되는 반체제성향이 강한 - 불법 민간사회집단들의 총합을 일컫는다. 중국 내 사회단체들에 대해 이민자 교수가 분석·제시한 이 두 가지 개념범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개념범주를 적용해 볼 때 이른바 ‘체제 내 시민사회’에 속하는 사회단체들이 바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적대적 모순에 해당하고, 파룬궁 집단이나 지하교회 등 이른바 ‘체제 외 시민사회’에 속하는 불법적 사회단체들은 중국 당국에 있어 적대적 모순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모순론과 통일전선전술에 의거하여 충분히 협조·협력·공생이 가능한, 비적대적 모순으로 간주되는 사회영역 및 사회단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과 정책방침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⁷⁾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덩샤오핑 집권 이후 진행된 중국의 대내개혁은 기본적으로 전지전능한 당-국가의 침투와 개입을 이완시키고 기존의 정치권력을 분산 및 하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협조적 관계 하의 공동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글로벌 시스템에 조용하게 되면서 보다 본격화되었는데, 중국 정부가 공민사회 이념, 정부 서비스 이념, 정부 효능 이념 등의 새로운 국가·사회관리 이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의 국가·사회관리 방식과 시스템은 개혁기에 걸맞은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국정운영 및 사회관리방식은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분권화된 시장식 정부’가 주목받게

7) 본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부터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은 필자(김성민 2016a, 2017)의 논문에서 발췌, 수정, 변형하였음.

되었고, 그 결과 거대한 관료제적 국가기구의 기능 축소·후퇴 및 민간사회 영역으로의 기능분산과 아웃소싱이 이루어졌다(정주영 2004, 240).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시장과 사회 내 존재하는 다종다양한 - 주로 사회 서비스와 복지 영역의 - 민간사회단체들의 역할과 역량을 중시하면서 민간사회영역과 사회단체들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7년 9월 제15차 당 대회에서 선언된 ‘소정부(小政府), 대사회(大社會)’의 원칙에 가장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당시 장쩌민 주석은 정치보고 가운데 ‘사회중개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가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0, 33). 이외에, 15차 당대회 이전부터 노정되기 시작한 사회영역 중시 및 사회단체 포용으로의 정책노선의 변화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고위관료의 언급과 이후 시행된 정책방침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1차 ‘중국 사회단체 관리업무 회의(中國社團管理工作会议)’에서 당시 국무위원 천권성(陳俊生)은 정치-사회 간 분리(政社分离)의 필요성과 사회영역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후 1994년에 이르러 국무위원 저우지아화(鄒家華)는 ‘전국 사회발전 업무회의(全國社會發展工作会议)’ 석상에서 ‘정부는 사회가 사회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고취해야 하고, 특히 비정부조직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중시해야 하며, 그들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천권성과 저우지아화 두 장관급 고위관료의 발언은 사회영역의 존재 의의와 사회 내 각종 사회단체의 역할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언급으로 알려져 있다(이남주 2007, 78).

이후 1998년 민정부(民政部)는 사회단체 관리를 담당하던 기존 민정부 산하의 ‘사단관리사(社團管理司)’를 ‘민간조직관리국(民間組織管理局)’으로 격상시키게 되는데, 이는 중국 당국이 사회영역 및 사회단체의 존재 의의와 순기능을 인정하게 되면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국가가 사회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 단체의 공식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등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권한과 지위를 보다 강화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장숙인 2004, 4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시기 대두한 사회영역과 사회단체를 비적대적 모순으로 파악하고 협력과 지원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당과 국가에 이로운 역할을 하도록 연합전선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비적대적 모순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마오의 두 번째 언급 역시 사회단체를 대하는 인식과 정책적 태도에 투영시키게 된다. 현재 당에 위협이 되지 않는 비적대적 모순이라는 판단에 잘못 다루거나 가볍게 다룰 경우 언제든지 적대적 모순으로 바뀔 수 있기에 항상 동일성과 투쟁성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지침과 원리는 개혁개방 시기 중국 당국의 사회단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당과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사회영역과 사회단체의 출현 및 성장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불가피함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회단체가 당의 지배와 영도 및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등에 유익한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단체가 서방 등 외부세력과 손을 잡고 공산당 일당 영도의 종식, 삼권분립, 정치 민주화 등 반국가적 및 반정부적 주장과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96년의 중앙관공청 22호 문건과 1999년 중앙관공청 34호 문건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민간조직 관리공작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중공중앙관공청과 국무원관공청의 통지(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關於進一步加強民間組織管理工作的通知)>(이하 <통지>로 약칭함)의 내용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각 유형의 민간조직은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신속히 발전했고 그 결과 이미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민간조직 발전과 관리공작을 매우 중시하여 최근 수년 간 일련의 조치를 통해 명백한 효과를 얻었다. (중략)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민간조직의 발전은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정과 균중을 연결하는 교량이자 유대로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및 물질문명 건설에 있어 보다 더욱 광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간조직의 발전과 관리공작은 주목해야 할 적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

히 많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략) 서방 적대세력은 국내 민간조직을 이용하여 우리와 합법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종종 민간조직 신분으로 출현하여 학술연구 혹은 자선기증으로 (자신을) 위장하며 이를 자금지원이나 협력의 수단으로 삼아 우리에게 대한 서구화 전력과 분열전략을 획책하고 있다. (중략) 중국 내 외국인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의 인사들이 무단으로 민간조직을 설립하고 있다.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외국인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의 인사들이 설립한 연합회·기금회·클럽·동맹회는 물론 해외 민간조직의 국내지부가 출현했다. 이러한 조직들은 현지에서 활성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조직은 지역을 넘어서까지 회원수를 늘리며 불법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 스며들어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략) 민간조직을 잘 관리하고 인도하면 그 적극적(긍정적) 작용(역할/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못 관리할 경우 소극적(부정적) 작용(역할/기능)을 하거나 심지어 그 작용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 (중략) 4항 기본원칙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 조직은 우리나라 사회안정과 정치안정에 중대한 문제거리를 만들고 있기에 극도로 해롭다. 그들과의 투쟁은 당의 운명, 사회주의의 성패, 인민군중의 근본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진지하게 대응하고 (중략) 시시각각 경계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빈틈을 막아 사회정치적 안정을 잘 수호하고 (후략)”

위 <통지>의 “민간조직을 잘 관리하고 인도하면 그 긍정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못 관리할 경우 부정적 역할을 하거나 심지어 그 역할을 손상하게 될 것이다.”고 명시된 내용은, 비적대적 모순을 가볍게 다루거나 잘못 다룰 경우 적대적 모순으로 전화하게 될 수 있다는 모순론의 기본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들과의 투쟁은 당의 운명, 사회주의의 성패, 인민군중의 근본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진지하게 대응하고 (중략) 시시각각 경계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빈틈을 막아 사회정치적 안정을 잘 수호하고”의 내용 또한 적대적 모순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동일성과 투쟁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통지>에 나타나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부정적 인식의 핵심은 결국, 사회 내 민간사회단체들이 당과 정부의 관리통제에서 벗어나 체제안정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라고 집약할 수 있다(안치영 2012, 55).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 당국은 사회단체를 중국 체제와 질서에 직접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비적대적 모순으로 인식하며 협력적 관계의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그들이 지닌 자원과 역량을 국정운영과 사회문제 해소에 활용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사회영역에서 이들 사회단체의 활동의 확장과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증강이 당과 정부가 설정한 선을 넘어 중국의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이중적 정책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적대적 모순을 처리하는 중국 당국의 행동원리이자 통전방침인 것이다.

3. 동일성과 투쟁성의 원리(대립과 통일의 원칙)

(1) 당-정부와 사회단체 간 동일성

통일전선의 형성과 통일전선전술 및 공작의 전개에 있어 그 대상과 동일성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해진다. 통일전선전술과 공작을 수행하는 당/정부와 통전 대상 간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동일성의 기반이 없다면 통일(연합)전선의 수립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동일성의 기반은 - 대략적으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1956년 이후로는 - 강대한 권력을 지닌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가 선제적 및 주도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부여하고 요구하는 방식과 성격을 띠게 된다.

2차 국공합작 시기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동일성의 기반은 반제국주의 및 반일본 투쟁이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당과 인민(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 민족부르주아) 간의 동일성의 기반은 봉건세력·매관료 세력·제국주의 세력 타파 및 신중국 건설이었으며, 덩샤오핑 시기 - 홍콩·마카오·대만과의 - 일국양제를 그 방안으로 하는 조국통일에 있어 당과 국내외 인민 간의 동일성의 기반은 애국주의였다.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후 시기 당/정부와 사회단체들 간의 동일성의 기반은 무엇일까. 1989년과

1998년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이하 <조례>로 약칭함)에서 그에 대한 답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는 사회단체의 등록과 설립, 단체의 관할기관 명시 및 관할기관의 임무, 단체의 운영과 활동, 단체의 준수사항, 단체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내용, 단체의 위법활동 시 벌칙 및 처벌, 단체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는 문건으로서, 중국 내 존재하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법적·제도적·행정적 관리의 근간이자 기초가 된다. <조례>는 1989년 10월 25일에 최초 제정·공포되었고 십여 년 후인 1998년 10월 25일에 수정·반포되었다.⁸⁾

1989년 <조례>의 제1장(총칙)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표를 선언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노골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98년의 수정된 <조례>의 제1장(총칙) 제1조에서는 이전 1989년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표현이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제4조는 ‘사회단체는 반드시 헌법·법률·법규·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고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원칙을 반대할 수 없으며, 국가의 통일·국가의 안전·민족단결에 해를 끼칠 수 없고 국가 이익·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사회도덕관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어 이야기해 보면 중국의 사회단체들은 그 지향성과 활동내용에 있어서 당/국가의 이데올로기 노선과 정책노선에 부합해야 하고, 사회주의 국가헌법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지지해야 하며, 국가의 안전 및 안정과 이익에 복무해야 하고, 국가통합, 사회통합, 민족통합에 이바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준수하고 따르는 단체들만 통전의 대상이 되어 정부에 의해 등록·설립이 가능하고 정부의 용인에 의해 제공되는 법적·제도적 공간 내에서 단체의 생존과 활동을 보장받고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할 의향이 없는 단체들은 정부에 의해 통전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중국이란 체제 내에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이

8) 1989년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는 1998년 수정된 <조례>가 반포되면서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사회단체에게 요구하는 통일전선 성립의 조건, 즉 동일성의 기반은 ‘사회주의 건설, 국가이익과 국가안진, 체제안정과 사회안정, 사회통합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강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당과 국가에 의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제시되고 부여되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회단체들만 통일전선의 범주대상에 포함되어 당/국가와의 결합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 우산 아래에서 합법적인 생존 및 활동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전선의 형성에 필요한 동일성의 기반을 만족하고 통일전선 내부로 편입된 사회단체들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각각 하나씩 살펴보자.

이민호 교수는 2005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직능단체, 군중단체, 자선단체, 공익기금회(공익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주민조직, NGO연구소 등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베이징의 시민활동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한 바 있는데,⁹⁾ 조사의 목적은 중국 사회단체의 활동, 역할, 당/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적 시민사회의 특징과 구조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이었다. 여러 설문과 답변 중 먼저 청소년 사업 관련 공익재단의 소속 활동가에게 제시된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문: 귀 단체가 중심으로 하는 활동은?

답: 빈곤지역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에이즈 방지 활동과... 그밖에 환경보호를 위한 식목활동도 하고 있다.

문: 이러한 활동에 대해 정부는 어느 정도 인정(‘지지’의 의미)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답: 국가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므로 - 정부가 -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단체의 활동을 CCTV에서 방영한 적도 있다.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공익단체의 활동가는 단체의 사업이

9) 이하 심층면접 자료는 이민호(2006, 287-295)의 글에서 발췌함.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국가에 협력하고 국가이익에 복무하는 보조적 기구’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단체가 CCTV에 소개된 일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가에 도움을 주고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 규정한 채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정부는 방송출연을 통한 단체 홍보 등 각종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도 알게 된다. 심지어 사회단체의 사무실까지 정부가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다(김재철 1999, 204). 그렇다면 CCTV 출연,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 외에 보다 직접적인 재정면에서의 정부 지원은 어떨까. 다른 설문의 사례를 보자.

문: 귀하가 속한 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財源)을 만들고 있는가?

답: - 회원들이 - 단비(회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한 활동가의 응답은 중국 정부에 등록된 사회단체들의 재정확보 방식에 대해 단적으로 보여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 사회단체들의 대다수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칭화대학 NGO연구소가 2000년도에 진행한 조사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연구소는 10,000개의 사회단체에 설문지를 보냈고 그중 1,500개 단체가 응답을 보내왔는데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정리한 결과, 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50%에 가까운 49.97%를 나타냈고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21.18%에 머물렀다(王名 2001, 19). 광저우와 샤먼의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단체 재정의 구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광저우 사회단체들의 경우 평균 41% 가량, 샤먼 사회단체들의 경우 평균 33% 가량이었다(박윤철 2005, 585). 광저우와 샤먼 그리고 보다 확대하여 광둥과 푸젠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고 중산층도 두터운 편이며, 개방화와 자유화 정도 및 시민의식 수준에 있어서도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지역이기에 정기 후원금과 비정기 기부금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에도 재정방면의 정부

의존도가 평균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중국의 여타 지역의 사회단체들의 재정방면의 정부 의존도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굳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국가이익의 증진·체제안정과 유지 등에 동참하는 것이 당과 정부가 사회단체들에게 선제적으로 요구 및 부여하는 동일성의 기반이었으며, 이 동일성의 기반을 받아들이고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단체만이 통일전선의 연합대상이 되어 국가로부터 여러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당-국가와 사회단체 간 투쟁성

한편, 모순론과 그에 근거한 통일전선전술의 기본원리와 원칙에 의거할 때, 동일성에 기반을 둔 연합은 양자 간의 투쟁이 불필요해지거나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순론에 따르면 절대적인 투쟁성은 상대적인 동일성(통일성) 가운데에서 늘 관찰되기에 투쟁성 없는 동일성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모순운동을 구성하는 변증법적인 ‘동일성과 투쟁성의 원리’ 또는 ‘대립과 통일의 법칙’이다.

개혁개방 이후 국가와 사회 내 사회단체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정책방침 역시 이러한 행동노선에 근거하여 ‘체제 내로의 편입과 포용적 방침’으로 표현되는 동일성의 모색 가운데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투쟁을 시도해왔다. 그렇다면 사회단체에 대한 당과 정부의 투쟁은 어떤 모습과 내용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투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간략히 말해서, 중국 당국은 사회단체에 대한 다양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제약과 통제를 가함으로써 통일(동일성)과 대립(투쟁성)의 변증법적 결합 과정을 주도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사회단체들을 국가권력 안으로 흡수 및 결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체제순응적이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활용 가능하며 당/정부의 국가운영과 사회운영에 있어 요긴한 도구적 기능을 담당하는 ‘길들여진’ 사회단체로 개조 및 개편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법/제도적 통제 방식과 내용이 무엇인지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¹⁰⁾ <조례>에 나타난 대(對)사회단체 관리통제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이중관리시스템(雙重管理體系)’에 의한 관리통제, 둘째로 중국 내 사회단체의 양적 규모에 대한 통제, 셋째로 사회단체의 활동·운영에 대한 상시적 감시·감독, 넷째로 정부의 자의적 행정처분을 통한 규제가 그것이다.

먼저 이중관리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자. 이중관리시스템은 사회단체를 관할하는 두 곳의 기관이 중층적이고 이중적으로 사회단체를 관리·감독·통제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데, ‘등기관리기관(登記管理機關)’과 ‘업무주관단위(業務主管單位)’가 동시적으로 각 사회단체의 관할기관이 된다. 이때 등기관리기관은 해당 사회단체가 존재하는 지역의 민정부문¹¹⁾이 되고 업무주관단위는 사회단체의 활동영역과 유관한 정부 산하 또는 관련 기관¹²⁾이 맡게 된다. 등기관리기관과 업무주관단위는 사회단체의 등기·설립 단계에서부터 설립 후 단체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는데,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조금 이후 살펴보도록 하고 본 내용에서는 단체 등기·설립 과정에서의 제도적 장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등기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의 제9조 및 제11조를 보면, 단체는 보증인 기능을 수행해 줄 업무주관단위로부터 심사와 동의를 획득한 후 등기신청서, 업무주관단위의 심사·승인 문서, 발기인의 기본정보와 신분증명서, 자금조사 보고서, 정관초안 등의 서류를 등기관리기관, 즉 해당 인민정부의 민정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되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사회단체로 등록¹³⁾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업무주관단위가 되어줄 기관을 확

10) 이하 네 가지 내용은 필자(김성민 2016b, 170-173)의 논문에서 수정 및 변형,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것임.

11)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 국무원 또는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이 사회단체 업무주관단위가 될 수 있다.

12)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 국무원 또는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이 사회단체 업무주관단위가 될 수 있다.

13)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등기사항에는 단체의 명칭, 주소, 설립취지·업무범위·활동지역, 법정대표자, 활동자금, 업무주관단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보호하는 것부터 단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사회단체의 업무주관단위로서 감독관리 등의 업무량이 막대한데다, 해당 사회단체의 기율위반 또는 위법행위 등 발생 시 업무주관단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¹⁴⁾에, 당정 산하의 관련 기관들은 사회단체의 업무주관단위가 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체 설립의 시작 단계부터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단체들을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리고 두 관할기관의 동의와 승인을 거쳐 등기·설립된 단체라 해도, 관할기관의 영향력과 입김에서 벗어나 자기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활동 및 존재하기란 매우 어렵다. 민정부문에의 등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매년 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하는 것이기에, 업무주관단위의 역할을 맡은 조직이 이후 그 보증인 역할의 지속을 거부할 경우, 혹은 업무주관단위의 동의와 승인을 받았다 해도 등기관리기관이 그것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단체는 등기가 취소되게 된다. 또한 사회단체 설립의 조건을 명시한 <조례> 제10조 역시 단체 설립에 있어 제도적 장벽으로 기능한다. 10조 조항은 전국성 단체의 경우 10만 위안 이상 그리고 지방성 단체의 경우 3만 위안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는데, 막 출범 단계에 있는 단체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두 번째, 단체의 수량과 규모에 대한 통제를 살펴보자.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동일 행정구역 내에 이미 업무범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사회단체가 있는 경우 - 업무주관단위를 확보한 후 등기신청을 했다 해도 - 등기관리기관은 단체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 차원과 전국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숫자와 규모에 대한 관리통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국 시민사회의 확대와 확장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내재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각 지역마다 교육, 복지, 보건위생, 환경 등 각 영역별로 하나의 사회단체

14) <민간조직 관리 공작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통지>(1999)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상술한 사항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위를 따져 민간조직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직책 분담에 근거하여 각 업무주관단위 및 등기관리기관 주요 영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만 승인이 되기에 사회단체 간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한 사회단체 및 나아가 시민사회의 세력확장은 기본적으로 통제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정 분야와 영역의 경우, 아예 어떠한 사회단체의 설립도 승인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어떤 신규단체가 등기를 신청할 때, 유사 범위와 유사 목적의 관변단체를 정부 주도로 급하게 설립해 해당 사회단체의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 정부가 - 주로 정부 입장에서 불편하고 민감한 - 특정 목적과 특정 분야의 사회단체의 설립을 지지하기 위해 본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유현정 2012, 94).

세 번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조례> 제27조부터 제31조에 따르면, 등기관리기관과 업무주관단위의 사회단체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 및 업무는 이러하다. 등기관리기관은 단체에 대한 연차검사(매년도 업무보고서¹⁵ 심사), 재무감사,¹⁶ 조례를 위반한 단체에 대한 감독·조사 및 행정처벌 부과 등을 시행하고, 업무주관단위는 단체의 헌법·법률·법규 준수 여부 감독, 정관에 따른 활동 여부 감독, 재무감사, 연차검사 초심(제1차 심의), 위법행위 조사 및 처리, 단체 청산사무 등을 시행한다. 이렇듯 등기관리기관과 업무주관단위는 사회단체의 설립 및 등록 단계부터, 그리고 등록 이후 단체의 일상적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해 심사권, 승인권, 지도권, 조사권, 감독권, 단속권 등의 보유한 채 상시적이면서 밀도 있는 관리를 수행하는데,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두 관할기관에 의한 이러한 중층적인 이중관리시스템은 사회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핵심요인으로 기능한다(이장원 2010, 579).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자의적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통한 통제를 살펴보자.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과 법규가 지니는 특징 중 하나로 규정 자체의 모호성과 포괄성을 꼽을 수 있는데, <조례> 역시 예외가 아니다(유현

15) <조례> 제31조에 따르면, 등록된 사회단체들은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작년도의 업무와 활동에 관한 업무보고서(공작보고서)를 업무주관단위와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보고서는 법률·법규·국가정책 준수 여부와 상황, <조례>에 따른 등기수속 이행 상황, 정관에 따른 활동 상황, 단체 인원과 기구의 변동 상황, 재무관리 상황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16)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사회단체는 국가에서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준수 및 이행해야 하고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출연금의 출처가 사회의 후원이라면 감사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정 2012, 94). <조례> 제4조는 “사회단체는 헌법·법률·법규·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할 수 없으며, 국가의 통일·안전 및 민족단결에 해를 끼칠 수 없고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 및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칠 수 없으며, 사회도덕과 관습을 위반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를 위반한 사회단체에 대한 행정처벌의 부과를 명시(제27조)하고 있는데 행정처벌의 종류와 방식(제33조에 명기)은 매우 광범하여, 경고처분과 시정 명령 등의 가벼운 처분에서부터 활동 중지 명령 등의 비교적 강도 높은 처분을 거쳐 - 사안이 엄중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 등기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국가의 통일·안전 및 민족 단결에 해를 끼치는 행위’,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사회도덕과 관습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이기에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그로 인한 행정적 처분 및 처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단체의 헌법·법률·법규·국가정책의 준수 또는 미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행정처벌 역시 정부에 의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제도적 현실에서 중국 내 사회단체들의 단체운영 및 사회적 활동과 사업에서의 운신의 폭과 공간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정부의 통제력과 영향력의 범위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존재하기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중국 당과 정부의 사회단체 정책은 모순론 및 통일전선의 원리에 상당부분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당 이래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중국 특색의 통일전선전술은 개혁개방 시기 사회단체 정책에도 여전히 원용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중국 사회주의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소하여 당과 정부의 집권 및 집정능력

과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사회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전선의 시각과 관점에서 사회단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즉,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데 사회단체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통일전선전술의 측면에서 사회단체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려는 기능주의적 혹은 실용주의적 접근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 당과 정부는 통일전선전술에 의거해 필요와 상황에 따라 협력 혹은 투쟁하는 정책적 이중성 또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이중성 혹은 양면성은 사회단체 대해 우호적이고 포용적인 방침을 시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고하고 촘촘하면서 밀도 있는 법적·제도적·행정적 통제관리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단체와의 통일전선 형성을 통해 제도와 체제 내로 단체를 포섭하여 그들이 지닌 자원과 역량을 국정운영과 사회문제 해소에 활용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사회 내에서 이들 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의 확장과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증강을 제약하고 지속적으로 체제와 제도 내에 묶어두려는 이중적인 정책방침이 구사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당과 정부는 통일전선을 통해 사회단체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상호 조율을 선제적 및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사회단체가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동일성의 기반인 것이다. 이 동일성을 바탕으로 사회단체를 포섭하여 당과 정부가 설정해 놓은 범주 내로 위치시키고 그 범위 안에서 약간의 제한적인 자율성을 제공하면서 제도적 및 공식적 활동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듯 통일전선 이론과 통전의 논리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단체의 존재와 활동이 현실적 및 제도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권 내로 포섭한 사회단체가 지니고 있는 자원과 효용가치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국정운영에 이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회단체가 당국이 설정한 테두리와 범주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경우, 즉 통일전선을 통해 사회단체로부터 얻는 효익보다 사회단체가 초래하는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소요되는 정치사회적 비용이 많아지게 될 경우, 통일전선은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강경한 통제와 억압이 가해지게 될 것이다. 즉 중국 공산당은 사회단체를 사회주의 건설의 동반자로 간주하는 동시에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당과 정부노선의 지지세력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계일 편역 (1987). 『중국 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의 역사 II』. 사계절.
- 김성민 (2016a). “매개구조론의 중국적 활용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와 함의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8집. 2호, pp. 183-223.
- _____ (2016b). “중국 민간사회조직의 ‘자기보존’ 지향 전략: 배경, 양상, 전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4호, pp. 153-180.
- 김재철 (1999). “편입과 제휴의 정치: 개혁기 중국에서의 정치권력과 사회단체.” 『한국정치학회보』. 33집. 3호, pp. 199-217.
- 마오쩌둥 (1989). 『실천론·모순론』. 이등연 역. 두레.
- 박윤철 (2005). “중국의 비영리조직(NPOs)의 성장과 시민사회 발전.” 『중국학연구』. 제33집, pp. 575-596.
- 브루노 쇼 편 (1986). 『중국혁명과 모택동사상 1』. 편집부 역. 석담.
- 안치영 (2012). “현대 중국의 민간조직 관리.” 『중앙사론』. 35집, pp. 31-64.
- 유현정 (2012). “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도 규제완화 동향.” 『국가전략』. 제18권. 2호, pp. 83-105.
- 윤경숙 (2003).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독교 교회의 발전과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남주 (2007).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폴리테이아.
- 이동영 (2013). “중국 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방식의 변화.” 『대한정치학회보』. 제21권. 2호, pp. 209-229.
- 이민자 (2008/2009).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 『중소연구』. 통권 120호, pp. 13-43.
- 이민호 (2006).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본 ‘중국적 시민사회’의 구조 분석.” 권용혁 외.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pp. 275-301.
- 이장원 (2010). “중국의 비정부기구 정책: 제도적 통제의 현황과 전망.” 『중국연구』. 제49권, pp. 573-593.
- 이철승 (2001). “모순론과 중국 현대철학의 동향.” 『진보평론』. 제10호, pp. 284-304.
- 장숙인 (2004). “중국 시민사회의 특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석 (2002). “중국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쟁과 NGO 태동의 의미.” 『비교사회』. 통권 제4호, pp. 187-209.

- 정주영 (2004). “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 관계: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시민사회와 NGO』, 제2권, 제2호, pp. 225-255.
- 康曉光 (2001). “轉型時期的中國社團.” 中國青少年發展基金會 基金會發展研究委員會 編. 『處于十字路口的中國社團』.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pp. 3-30.
- 孫遠東 (1998). “當代中國公共政策制定的結構分析.” 『理論探索』, 第2期, pp. 60-63.
- 王名 主編 (2001). 『中國NGO研究-以個案為中心 2001』. 北京: 聯合國區域中心·清華大學NGO中心.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6). 『十四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北京: 人民出版社.
- _____ (2000). 『十五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1991). 『毛澤東選集 1』. 北京: 人民出版社.

2. 기타

- 國務院民政部 (1998). “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 國務院.
- 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 (1999). “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關於進一步加強民間組織管理工作的通知.” 中共中央·國務院.

| 논문투고일 : 2016년 11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11월 18일 |

| 게재 확정일 : 2016년 12월 0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4 (2016)

China's Social Organization Policy: Focusing on 'United Front' Strategy

Sung-Min Kim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seo University)

The United Front Strategy is the basic organizational/behavior tactic in Marxist-Leninist tradition. From the foundation of CCP to establishment of China, and in the process of socialist-construction since establishment of China, the United Front Strategy has been utilized in national policy by CCP. Social Organization Policy is no exception. China's social organization is basically based on 'United Front Strategy, and the United Front Strategy is basically based on the Mao's On Contradiction. The key principles of On Contradiction and United Front Strategy are 1) the principle of the main contradiction and the secondary contradiction, 2) the principle of the hostile contradiction and the non-hostile contradiction, 3) the principle of contradiction and unification. These three key principles are reflected in social organization policy. United Front Strategy is results in the combination between contradiction and unification, therefore social organization policy implies a duplicity. CCP/Chinese government attempts inclusion and engagement to social organization on the one hand, attempts struggle and control on the other hand. Finally, if prescribing the nature of the Chinese government's social organization policy in a word, it could be expressed in 'duplicity/double-sidedness of engagement and control.'

186 아태연구 제23권 제4호 (2016)

- Key words: United Front, United Front Strategy, Contradiction and Unification, Social Organization, Social Organization Policy of China